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연장,
대형마트 규제 일몰 신설〉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55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13.
3. 회 부 일 : 2025.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 “SSM¹⁾”)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제2조제4호 삭제 등),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일몰 기한을 신설하는 한편(안 제48조의2제1항), 일몰이 도래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제는 유지하여 2030년 11월 23일까지 연장(안 제48조의2제2항)하는 내용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1) Super Supermarket(SSM)

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
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
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
포

5. ~ 16. (생 략)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
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
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
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
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
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
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
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

5. ~ 16. (현행과 같음)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
규모점포와-----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① -----개설하려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7. (생략)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

-----대규모점포의-----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3(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

-----60일 전까지-----

-----.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
----대규모점포를-----

-----.

1. ~ 17. (현행과 같음)

② -----
-----대규모점포의-----

-----.

③ -----
--대규모점포의-----

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6. (생략)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 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4. (생략)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
-----대규모 점포의-----.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개설자-----

-----.

-----.

1. 대규모점포개설자-----

-----, -----대규모점포의-----
-----.

2. 대규모점포의-----

3.·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 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

② -----

-----.

1. (현행과 같음)

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

제12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개설자는-----
-----.

1.·2. (현행과 같음)

3. -----대규모점포를-----

② -----대규모점포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
-----.

1. (현행과 같음)

2. -----

가. -----대규모점포에-----

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
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 라. (생략)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
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
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생략)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
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
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
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
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
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
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
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
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

나. ~ 라. (현행과 같음)

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

-----.

④ -----대규모점포에서는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
간의 제한 등) ① -----

-----대규모점
포와-----

-----포함한다)에-----

-----.

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대규모점포로서-----
-----대규모점포에-----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대규모점포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

-----.

④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의-----
-----.

1. ~ 3. (현행과 같음)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

⑥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

-----.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대규모점포관리자는-----

-----.

②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

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

1.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대규모점포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관리자는-----

-----.

②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

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

-----.

④ -----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
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
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
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
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
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
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
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
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되는 법인

②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관
리자는 대규모점포의-----

-----대규모
점포를-----.

② (현행과 같음)

③ 대규모점포관리자는-----

-----.

④ -----
대규모점포의-----

-----.

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
-----대규모점포개설자
의-----.

1. 대규모점포개설자가-----

2.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대규모점포를

3. -----대규모점포개설자가-----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3조의2(대규모점포의 휴업·폐업 신고) 대규모점포개설자-----

대규모점포-----

--.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

1. -----대규모점포와-----

2. -----대규모점포와-----

3. -----대규모점포와-----

4.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 략)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 ~ 7. (생 략)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규모점포-----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
-대규모점포와-----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청문) -----

-----.

1. -----대규모점포-----

2. ~ 7.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관리현황 점검·감독 등) ①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규모점포관리자에-----

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현황, 업무의 집행 및 비용의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통보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4. (생략)

② (생략)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대규모점포관리자의-----

-----.

제45조(통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대규모점포-----대규모점포개설자의-----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수수료) ① -----대규모점포의-----

-.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① 제12조의2, 제13조의4 및 제52조제1항은 2028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

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③·④ (생략)

제52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

진다.

②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3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의-----

2. -----
-----대규모점포개설자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대규모점포의-----

2. -----대

<u>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u> <u>하지 아니한 자</u> 2의2. ~ 6. (생략) ④ (생략)	<u>규모점포개설자의-----</u> ----- 2의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법 제48조의2²⁾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사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등록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SSM에 관한 규제임.

이러한 규제는 대형마트 및 SSM 확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규제 존속기한 규정을 둔 취지는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임.

동 제도는 최초 2010년에 한-미, 한-EU FTA 체결 시 통상마찰 가능성³⁾ 등을 감안하여 일몰제의 형태로 입법되어 그 시효를 몇 차례 연장⁴⁾하며 현재에 이르렀으며,

개정안 발의 당시 법 제48조의2에 따라서 규제 등의 효력이 만료될

-
- 2) 개정안 발의 당시 법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3) 한-미, 한-EU FTA 등 체결시 유통업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10년 국회 논의 당시 통상문제 발생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몰을 도입하고, 규제의 최초 존속기한은 3년(2010. 11. 24. 시행)으로 하였음
- 4) 2010년 최초 도입 → 2015년, 2020년 각각 5년 연장 → 2025년 4년 연장 → 2029년 11월 23일 존속기한 만료 예정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SSM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므로, 개정안은 SSM 관련 규제는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제는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유지하는 등 일몰에 따른 규제 폐지에 대처하는 내용임.

그런데 개정안의 발의 직전에 소관 상임위인 우리 위원회에서 일몰 연장과 관련한 개정안 3건⁵⁾을 심의하였고, SSM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규제를 4년 연장(2029년 11월 23일까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개정안 발의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되었음⁶⁾.

선행 개정안 3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의결: 25.9.25.

개정안(우재준의원안) 발의: 25.10.13.

선행 개정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의결: 25.11.6.

선행 개정안(대안) 본회의 의결: 25.11.13.

개정법 시행: 25.11.2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SSM 규제 연장 여부 및 기간을 이미 심사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2209160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2211037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제2212489호)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5.11.21. 법률 제21145호. 2.25.11.21. 일부개정)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 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행 개정안 3건의 심사 과정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므로, 안 제48조의2제1항 개정 부분은 선행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임.

유통법 일몰조항(제48조의2)에 대한 개정안 내용 비교

일몰조항(48조의2)	‘25.11.23 이전 조항	유통법 개정 (‘25.11.21 시행)	우재준의원안 (‘25.10.13 발의)
준대규모점포 규제	‘10년 도입 이후 계속 5년씩 연장	4년 연장	삭제
전통상업보존구역	‘10년 도입 이후 계속 5년씩 연장	4년 연장	5년 연장
일몰전 규제필요성 등 국회보고	해당없음	신규도입	해당없음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규도입(3년)

현행법은 SSM과 달리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규제의 유효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를 폐지하는 별도의 법률 개정 전에는 계속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유효기한을 정하여 2028년 11월 23일까지만 효력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규제의 유효기한을 신규로 설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제12조의27), 제

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12조의2 규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제13조의48) 및 과태료(제52조제1항9))에 관한 사항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당초의 법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를 규제하더라도 전통시장·소규모점포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새벽배송과 같은 영업 방식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 등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적 이익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법이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9)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10) 동아일보, “마트 판매 격감... 전통시장 아닌 쿠팡만 살찌운 유통 규제”, 2026.1.5.

정한 일몰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규제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게 되므로, 법의 경직적 운영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점포 규제에 대한 존속기한 신설 등 규제 조정은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다수 협회·민간단체도 대규모점포 규제에 대한 조정은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참고자료).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개정안에 대한 협회 · 민간단체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25.11.14)	☐ 개정안 반대 - SSM은 지역 슈퍼마켓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규제 폐지 시 대기업 유통사가 지역 상권 공격적 잠식 -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라는 급격한 내용의 도입으로 골목 상권 보호 장치 제거 및 대형 유통업체만 특혜 제공 결과 우려 <u>규제 조정은 소상공인 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점진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u>
소상공인 연합회 (25.11.14)	☐ 개정안 반대 <u>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u> -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가속화하여 지역 유통시장 독과점을 심화시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에 위배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규제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인근에 SSM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음
전국상인 연합회 (25.11.14)	☐ 개정안 반대 - 준대규모 점포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매출에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점포로 규제를 더 강화해야하는 실정임 <u>규제의 존속기한(제48조의2)은 일몰제가 아닌 상시 제한해야 할 것으로, 유예기간 설정은 폐지되어야 함</u>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 협동조합 (25.10.24)	☐ 개정안 반대 - 온라인 유통의 급격히 성장으로 소상공인 영업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유통에 이중적인 압박을 받아 생존이 더욱 위협받을 수 있음 <u>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오프라인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u>